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남동연수지사) 공무직(시설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남동연수지사)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공무직(시설직 주임(나)_기계) 1명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 임용 예정일: 2024. 12. 16.(월)
- 수행업무

채용분야(직위)	수행업무
시설직 주임(나)_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옥 시설물의 점검, 운전 및 보수(응급조치 등), 시설물 관리 관련 업무분장으로 부여받은 업무수행 등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지원자격

분야	지원자격
시설직 주임(나)_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시설직: 만 60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기계 분야(에너지, 공조,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인정되는 자격증

분야	자격증	
기계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11. 21. 기준)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4명 미만 채용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초 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초 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서류 전형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 전형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 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서류 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 전형	5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 전형	5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서류전형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11. 21.)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근무장소: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시설직 주임(나)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 준용 ※ 교대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옥 근무인원에 따라 2교대 또는 4교대로 근무할 수 있음

정년: 시설직 만 60세

보수월액(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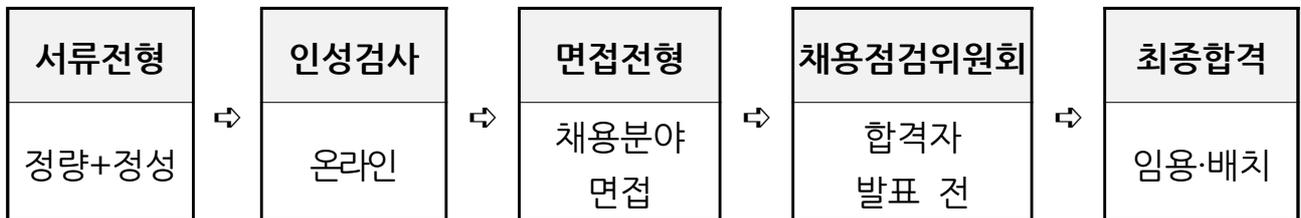
구분	시설직 주임(나)
연봉월액	2,480천원

※ 교대근무자가 근무편성표에 의하여 야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 지급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전형단계	전형 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일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기간: 2024. 11. 14.(목) ~ 11. 21.(목) 18:00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nps.recruiter.co.kr)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2024. 11. 28.(목)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내용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 동일 내용 반복 등)는 불합격 처리 	'24. 11. 29.(금)
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2024. 11. 29.(금) ~ 12. 1.(일)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방법: 온라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검사결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 2024. 12. 3.(화)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방법: 조별 면접(1개조 5명 내외, 조별 30분 내외) 실시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개별면접으로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24. 12. 6.(금)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12. 16.(월) (예정) 임용 후 시보기간(3개월)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직(무기계약직) 임용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면접전형 시 제출)
시설직	<p>1. (경력사항 관련) 경력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2)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종 <p>※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p> <p>※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p> <p>(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p> <p>※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이며, 공무원은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p> <p>2. (우대사항 관련) 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의사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4.11.21.)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p> <p>3. (자격사항 관련)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자격증 사본</p>

4.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접수처: 이메일(nps4111hr@nps.or.kr)로 신청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4. 12. 6. ~ 12. 21.)
 - 세부방법: 지원자 문의에 답변
 - 예외사항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세부 수행업무와 근로조건 등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31-229-40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4.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